

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즉 시	
신고인	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	전화번호		
변경사항	운행형태(광역형 또는 도시형)				
	변경연월일				
	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	
변경 사유					

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
특별자치도지사·도지사
귀하

첨부서류	1. 신규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. 정류소·차고지 또는 부대시설의 명칭·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(명칭·위치 또는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12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